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2026년 고용노동부 지원금**

2026.01.28

목차

본 자료는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주요 지원금 제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업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별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I. 기업 채용 지원

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2. 고용촉진장려금
3. 정규직 전환 지원금
4. 고령자 고용지원금

II. 유연 근무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1-1. 소정근로시간 단축
 - 1-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1-3. 워라밸+4.5 프로젝트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2-1. 유연근무장려금
 - 2-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III. 고용 유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 유급고용유지지원금
3. 무급고용유지지원금

IV.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 대체인력지원금
3. 업무분담지원금

용어 정리

고용노동부 사업주 지원금은 '요건형'과 '공모형'으로 구분되며, 아래에서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 공모형 지원금

사업주가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에, 지원금 지급신청이 가능한 지원금



☰ 요건형 지원금

사전 사업참여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 가능한 지원금



기업 채용 지원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모형 지원금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구분하여, 청년(채용일 기준 만 15~만 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Cf) 2025년에는 유형1과 유형2로 구분하여,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 또는 제조업 등 빈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지원요건	<수도권 유형>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업애로청년-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비수도권 유형>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내용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 월 평균 임금 450만원 이하 <수도권 유형> - 기업: 월 6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유형> - 기업: 월 6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근로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비수도권 지역별 상이))

지역 구분

1.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

2.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여 청년인센티브 차등 지급
(일반 비수도권)
(우대지원 지역)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 지역)

감원방지의무!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 금지(전체 근로자 대상)



감원방지의무 위반 상실코드

: 23번 코드, 26-3코드

cf) 26-1, 26-2번 코드는 감원방지의무 위반 X

기업 채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 모든 기업

요건형 지원금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원요건	▪ 취약계층 구직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산업인력공단 등 기관에 구직등록 ▪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 60만원 ▪ 피보험자수 30%까지 지원(최소 3명 ~ 최대 30명까지) <table><tr><th>유형</th><th>회차별 지원액(6개월단위)</th><th>연간 총액</th></tr><tr><td>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td><td>360만원</td><td>720만원</td></tr><tr><td>대기업</td><td>180만원</td><td>360만원</td></tr></table>			유형	회차별 지원액(6개월단위)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기업	180만원	360만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6개월단위)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기업	180만원	360만원										

감원방지의무!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 금지(전체근로자 대상)

기업 채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공모형 지원금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

💡 2026년 재도입 지원금

지원요건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계획을 이행 ▪ 비정규직 근로자(6개월 이상 근속&고용보험 가입)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동종·유사 정규직과 비교하여 근로조건 등에 불합리한 차별 X									
지원내용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또는 월 60만원 ▪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한도까지 지원(최소 3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table><tr><th>구분</th><th>1개월 지급액</th><th>연간 총액</th></tr><tr><td>정규직 전환 지원금</td><td>40만원</td><td>480만원</td></tr><tr><td>임금 인상 보전금 (월 임금 인상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td><td>20만원</td><td>240만원</td></tr></table>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	40만원	480만원	임금 인상 보전금 (월 임금 인상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원	240만원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	40만원	480만원								
임금 인상 보전금 (월 임금 인상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원	240만원								

기업 채용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요건형 지원금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

지원요건	▪ 신청 분기 60세 이상인 월 평균(3개월)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지원내용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최대 2년간 지원)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까지 지원(최소 3명에서 최대 30명까지)								
	<table><tr><th>구분</th><th>1인당 1분기 지급액</th><th>연간총액</th></tr><tr><td>고령자 고용지원금</td><td>30만원</td><td>120만원</td></tr></table>			구분	1인당 1분기 지급액	연간총액	고령자 고용지원금	30만원	120만원
	구분	1인당 1분기 지급액	연간총액						
고령자 고용지원금	30만원	120만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지원 중단!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6년에 최초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X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8조(지원요건)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요건형 지원금

가족돌봄, 건강, 퇴직준비, 임신, 육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요건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마련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최소 1개월)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 관리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X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2주)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X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또는 50만원을 1년간 지원
-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한 (3명 ~ 30명)

구분	1개월 지급액		1년 최대 지급액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36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는 경우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요건형 지원금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시간 등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2026년 신설 지원금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마련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6이하)를 둔 근로자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매일 1시간 단축 必 & 최소 1개월)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X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 ▪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한 (3명 ~ 30명)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1개월 지급액</th><th rowspan="2">1년 최대 지급액</th></tr> <tr> <th>장려금</th><th>임금감소액 보전금*</th></tr> </thead> <tbody> <tr> <td>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td><td>30만원</td><td>X (단, 주 30시간 이하 단축 시 지급 가능)</td><td>360만원</td></tr> </tbody> </table>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는 경우에 지원			구분	1개월 지급액		1년 최대 지급액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30만원	X (단, 주 30시간 이하 단축 시 지급 가능)	360만원
구분	1개월 지급액		1년 최대 지급액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30만원	X (단, 주 30시간 이하 단축 시 지급 가능)	36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워라밸 + 4.5 프로젝트 –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모형 지원금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소정 근로 + 연장 근로)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 2026년 신설 지원금

지원요건	▪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결과 제출 ▪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20만~60만원(1년간) +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有 ▪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30%(최소 3명~최대 100명)		
	구분	유형별 도입 지원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2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신규채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1년)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신규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1년)
생명 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은 월 10만원 가산			
*전면도입 -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 부분도입 - 2시간 미만 단축			

(기존)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은 2026년 신규 신청 X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 4.5 프로젝트’가 신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공모형 지원금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지원요건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 승인 <table><tr><td>시차출퇴근</td><td>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형태</td></tr><tr><td>선택근무</td><td>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td></tr><tr><td>재택근무</td><td>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td></tr><tr><td>원격근무</td><td>근로자가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td></tr></table>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 원격), 근로시간(선택, 시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전자 기계식 방식의 근태관리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선택근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근로자가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선택근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근로자가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지원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기준 피보험자수 30%(최대 70명 한도) <table><tr><th>유형</th><th>1인당 1개월 지급액</th><th>연간 지급 총액</th></tr><tr><td>재택, 원격 근무</td><td>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td><td>240만원</td></tr><tr><td>육아기 시차출퇴근</td><td>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td><td>240만원</td></tr><tr><td>선택근무</td><td>30만원(단축일 1시간 이상 단축, 총 단축시간 월6시간 이상)</td><td>360만원</td></tr></table> * 육아기(초등학교 6학년 및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유형	1인당 1개월 지급액	연간 지급 총액	재택, 원격 근무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선택근무	30만원(단축일 1시간 이상 단축, 총 단축시간 월6시간 이상)	360만원
유형	1인당 1개월 지급액	연간 지급 총액											
재택, 원격 근무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선택근무	30만원(단축일 1시간 이상 단축, 총 단축시간 월6시간 이상)	36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공모형 지원금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요건	▪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 지원금 지급 시점에 유연근무 제도,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제도를 활용 ▪ 사용의무기간有(설치형 방식은 2년, 사용료 방식은 개별 약정된 사용기간으로 최대 2년)								
지원내용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비 및 사용료 80%로 지원(1천만원 한도) ▪ 단,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관리시스템 사용료 전액 지원(1년 180만원 한도) <table> <tr> <th>종류</th><th>지원 대상 시스템</th></tr> <tr> <td>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td><td>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td></tr> <tr> <td>보안시스템</td><td>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td></tr> <tr> <td>정보시스템</td><td>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td></tr> </table>	종류	지원 대상 시스템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종류	지원 대상 시스템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지원대상 제외!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계약 체결한 경우 포함)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 유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형 지원금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

지원요건	- 정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 등에 명시) - 계속고용제도 도입 <table border="1" data-bbox="733 634 2341 843"> <tr> <td>정년 연장</td><td>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td></tr> <tr> <td>정년 폐지</td><td>기존 정년 폐지</td></tr> <tr> <td>재고용</td><td>정년 이후 '모든 근로자'를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도 지원</td></tr> </table>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일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된 근로자일 것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정년 폐지	기존 정년 폐지	재고용	정년 이후 '모든 근로자'를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도 지원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정년 폐지	기존 정년 폐지						
재고용	정년 이후 '모든 근로자'를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도 지원						
지원내용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연간 최대 360만원) - 단,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원 추가 지급(연간 최대 480만원) - 기준 피보험자수 30%(최소 3명, 최대 30명)						

고용 유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모든 기업

요건형 지원금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 기준달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휴업·휴직을 실시(유급) -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table border="1" data-bbox="843 701 2229 811"> <tr> <td>유급휴업</td><td>고용유지조치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td></tr> <tr> <td>유급휴직</td><td>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td></tr> </table>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유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유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						
지원내용	▪ 1인당 1일 66,000원 한도(최대 180일까지) <table border="1" data-bbox="843 919 2372 1126"> <thead> <tr> <th>구분</th><th>지원수준 (1인당 1일 66,000원 한도)</th></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td><td>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td></tr> <tr> <td>대기업</td><td>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 지원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td></tr> </tbody> </table>	구분	지원수준 (1인당 1일 66,000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	대기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 지원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구분	지원수준 (1인당 1일 66,000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						
대기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 지원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감원방지의무&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 금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 X

고용 유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모든 기업

공모형 지원금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휴업·휴직 실시(무급)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table data-bbox="840 711 2305 903"> <tr> <td data-bbox="840 711 1026 806">무급휴업</td><td data-bbox="1026 711 2305 806">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을 실시(30일 이상) 19인 이하: 50% 이상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999명: 10% 이상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td></tr> <tr> <td data-bbox="840 806 1026 903">무급휴직</td><td data-bbox="1026 806 2305 903">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실시(30일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999명: 10% 이상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td></tr> </table>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노동위원회 승인 必) ▪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고용센터에 제출 & 승인	무급휴업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을 실시(30일 이상) 19인 이하: 50% 이상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999명: 10% 이상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무급휴직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실시(30일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999명: 10% 이상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무급휴업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을 실시(30일 이상) 19인 이하: 50% 이상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999명: 10% 이상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무급휴직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실시(30일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999명: 10% 이상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한도 지원(최대 180일까지)				

감원방지의무&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 금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 X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요건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table><tr><th>구분</th><th>첫 3개월</th><th>이후 9개월</th><th>연간 지급 총액</th></tr><tr><td>기본</td><td colspan="2">월 30만원</td><td>360만원</td></tr><tr><td>특례*</td><td>월 100만원</td><td>월 30만원</td><td>570만원</td></tr><tr><td>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td><td colspan="2">월 10만원</td><td>120만원</td></tr></table>	구분	첫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급 총액	기본	월 30만원		360만원	특례*	월 100만원	월 30만원	57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원		120만원
	구분	첫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급 총액													
	기본	월 30만원		360만원													
	특례*	월 100만원	월 30만원	57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원		12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와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지원X’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번째 허용 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table><tr><th>구분</th><th>1개월 지급액</th><th>연간 지급 총액</th></tr><tr><td>기본</td><td>월 30만원</td><td>360만원</td></tr><tr><td>인센티브*(추가지원)</td><td>월 10만원</td><td>120만원</td></tr></table>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지급 총액	기본	월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월 10만원	120만원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지급 총액															
기본	월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월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번째 허용 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금 50% 분할 신청!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 기간에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근로자 자진 퇴사도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대체인력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형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 - 출산전후휴가 등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											
지원내용	인수인계기간 지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 or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최대 1개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각각 법령에 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											
	<table><tr><th>구분</th><th>1개월 지급액</th><th>최대 연간 총액</th></tr><tr><td>30인 미만</td><td>월 지급액의 80% (최대 140만원 한도)</td><td>1,680만원</td></tr><tr><td>30인 이상</td><td>월 지급액의 80% (최대 130만원 한도)</td><td>1,560만원</td></tr></table>			구분	1개월 지급액	최대 연간 총액	30인 미만	월 지급액의 80% (최대 140만원 한도)	1,680만원	30인 이상	월 지급액의 80% (최대 130만원 한도)	1,560만원
	구분	1개월 지급액	최대 연간 총액									
	30인 미만	월 지급액의 80% (최대 140만원 한도)	1,680만원									
30인 이상	월 지급액의 80% (최대 130만원 한도)	1,5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 규모 구분 없이 월 12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금 50% 분할 신청 요건 없음! -2026.1.1. 개정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전액(100분의 100)을 신청할 수 있음

단, 2025.12.31. 이전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제도 有(사용 기간 중 50% 지급, 복귀 1개월 후 나머지 일시금 50% 지급)

감원방지의무!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 제한 & 기지급 지원금 반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업무분담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지원

지원요건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최대 5명 한도) &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원내용	<육아휴직> ▪ 육아휴직 근로자 1명당 아래의 한도로 지원 <table><tr><th>규모 구분</th><th>1개월 지급액</th></tr><tr><td>30인 미만</td><td>월 최대 60만원</td></tr><tr><td>30인 이상</td><td>월 최대 40만원</td></tr></tabl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 규모 관계 없이, 월 최대 20만원		규모 구분	1개월 지급액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규모 구분	1개월 지급액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지원금 50% 분할 신청 요건 없음!

업무분담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전액(100분의 100)을 신청할 수 있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65, B동 907호(갈현동, 상상자이타워)
주차 : 해당건물 B1~B4층 주차장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나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버스 (과천지식정보타운 정류소에서 도보15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 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 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2-6949-1227** 팩스 **02-6949-1678**

양재모 대표 공인노무사 cpla21@hrhanalaw.com

김재언 공인노무사 cplaeony@hrhanalaw.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hrhanalaw.com

이정빈 공인노무사 cplabin@hrhanalaw.com

신형재 공인노무사 cplahj@hrhanalaw.com